

예산총칙

2012년도 추경 제3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348,658,204	40,459,746
일반회계	915,077,648	27,452,329
특별회계	433,580,556	13,007,417
공기업특별회계	161,353,613	4,840,608
상수도사업	83,491,237	2,504,737
하수도사업	77,862,376	2,335,871
기타특별회계	272,226,943	8,166,808
공유재산관리	45,997,845	1,379,935
의료급여기금	4,408,024	132,24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1,914,147	57,42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799,157	23,975
도시재정비촉진	11,832,779	354,983
도시개발	23,352,609	700,578
기반시설	1,601,784	48,054
교통사업	37,985,630	1,139,569
도시철도건설사업	144,334,968	4,330,04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12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12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16,44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2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55,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